

# 2019년도 제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13.(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56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00건(안전번호 제2019-31387호~3248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사진 게시물 2개 안전(제2019-31387, 31388호), 분양예정 아파트 소개 글을 무단 이용한 게시물 2개 안전(제2019-31389, 31390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전송된 음원파일 안전(제2019-31391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6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
- B 위원 :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도 찬성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31387호~3248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500건임  
안전번호 제2019-31387, 31388호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일하는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사진을 무단으

로 사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물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사진들은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피사체의 충실한 사실적 재현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과거 온라인쇼핑몰 내 제품 광고 사진 또는 제품 사용 관련 이미지들의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서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논의한 바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31387, 31388호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사진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31387, 31388호 게시물에 대해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31389, 31390호는 부동산 중개업자

로 보이는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민원인이 작성한 아파트 분양정보 소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이 작성한 서울지역 4월 분양예정 아파트 소개 글은 아파트 단지명, 소재지, 공급세대수, 시공사, 교통여건 정보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나열하고 있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민원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출처의 링크 페이지를 주면서)링크로 연결되는 웹페이지가 민원인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것은 맞으나, 원 게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31389, 31390호 분양예정인 아파트 소개 글을 무단 이용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글은 민원인의 글과 다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민원인의 글을 일부 발췌,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1389, 31390호 게시물에 대해 아파트 분양정보 소개글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대상 게시물이 별도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31391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캡처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최신 가요의 음원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서)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보호원은 위 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실제로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른바 '3단계 채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31391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음원공유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가요 음원파일을 한 곡씩 제공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캡처자료를 보여주면서) 총 3곡의 가요 음원파일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화면과 음원파일의 재생화면은 없음

- C 위원 :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캡처자료를 보여주면서)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당사자가 특정되고 있음
- C 위원 :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모르는 사람과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캡처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목적이 아닌 친목도모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보임  
참여자들의 대화방아이디를 보면 당사자에 관한 사항(나이, 지역, 성별)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카카오'에서는 오픈채팅방을 대화 참여자, 개설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카오'에서는 오픈채팅방 대화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기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C 위원 : 충분한 답변이 되었음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1391호 게시물에 대해 보호원이 불법복제물등이 공중의 이용에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할 수 없었고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등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31392~3139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해외 드라마,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특히 제2019-31392호의 게시물은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전체 분량(3분)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블로그를 보여주면서)해당 블로그에는 다수의 해외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게시물이 1,000건 넘게 있고, 게시자는 파워 링크 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블로그에 노출되어 있는 광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블로그 하단의 광고를 보여주면서)게시물 하단에 노출되어 있으며 광고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해당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은 네이버에서 제공 하



는 것인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네이버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 스트리밍으로 재생되고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보다 능동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19-31392~31399호 게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31400~32487호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출판,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건번호 제2019-31400~3248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영상물 등은 불법복제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1400~3248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1387호~3139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31392~32487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20.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